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본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파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상지대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상지대학교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사기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담당부서는 감사팀으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 및 확인

제5조(신고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조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3. 공익신고의 사실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제6조(신고내용 확인)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조사기관장은 공익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제7조(의견진술 요구) ① 조사기관장은 신고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접수보고) ① 조사기관장은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

제9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공익신고 대리인 포함)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을 통해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조치) 총장은 공익신고자가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보호조치) 총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나 대리인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장 공익신고 처리

제13조(처리기한) ①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기관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요청) 조사기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나 학과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소속 직원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제15조(신고사항 심사) ① 조사기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의견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조사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 통보) 조사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부서(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접수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기관장은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제20조(심의기구) 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
2.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비밀보장) ① 공익신고와 관련된 접수 및 처리 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사진 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② 조사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 내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법인 정관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피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따르며,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기획예산팀-5364호, 2022.09.29.)

이 규정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익 신고서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 | | |
|----|--|------------|--|
| 성명 | | 휴대전화 번호 | |
| 주소 | | | |

2. 공익신고의 내용

| | |
|-----------------------------------|--|
| 관계 부서 (중복기재 가능) | |
| 신고의 취지 및 이유 | |
| 신고의 사실내용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공익제보 내용 확인 |
|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성명, 연락처 |
|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익제보 접수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20 년 월 일 | |
| 제출인: _____ (서명/인) | |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신고자 | 성명 | |
| | 주소 | |
| | 핸드폰 번호 | |
| 이의신청 이유 | | |

상기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